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지역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비교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지방자치전공

김 명 희

2012년 8월

제주지역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비교연구

지도교수 남 진 열

김 명 희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8월

김 명 희의 행정학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12년 8월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Awareness of Running Extended Hours of Day Care Centers in the Jeju Region between Parents and Day Care Center Teachers

Myung-hee Kim

Supervised by professor Nam, chin-yeo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12. 8.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용어의 정의 4

II. 이론적 배경

1. 보육의 일반적 사항 7
2. 시간 연장 보육의 개념과 필요성 10
3. 시간 연장 보육의 특징 및 현황 15
4. 선행연구의 고찰 22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25
2.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26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29
2. 시간 연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식도 35
3. 학부모 집단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 42
4. 보육교사 집단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 46
5.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카이 제곱 검정 51
6.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평균차이 검정 55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59
2. 정책 제언 63

참 고 문 헌 66

ABSTRACT 69

부 록 72

표 목 차

<표2-1>보육과 교육의 차이	8
<표2-2>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	9
<표2-3>전국 시간 연장어린이집 일반 현황	17
<표2-4>전국 방 과 후 어린이집 일반 현황	17
<표2-5>제주도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일반 현황	21
<표2-6>제주도 방 과 후 통합 어린이집 일반 현황	22
<표3-1>질문지 구성요소	25
<표3-2>학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6
<표3-3>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7
<표4-1>학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29
<표4-2>학부모의 보육과 관련한 특성	30
<표4-3>보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인식수준	32
<표4-3>학부모의 보육과 관련한 인식수준	33
<표4-3>학부모의 보육과 관련한 인식수준	34
<표4-4>행정지원의 필요여부(학부모)	35
<표4-5>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6
<표4-6>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현황	37
<표4-7>보육교사의 보육과 관련한 인식수준	38
<표4-7>보육교사의 보육과 관련한 인식수준	39
<표4-7>보육교사의 보육과 관련한 인식수준	40
<표4-8>어린이집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41
<표4-9>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결과	42
<표4-10>학부모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45
<표4-11>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결과	47
<표4-12>보육교사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50
<표4-13>성별과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51
<표4-14>학력과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52
<표4-15>시간 연장 보육 프로그램과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52
<표4-16>시간 연장 보육의 합리적 운영시간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53
<표4-17>시간 연장 보육료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54
<표4-18>필요한 행정지원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54
<표4-19>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평균차이 분석결과	55

국 문 요 약

보육이란 아동들의 보호·교육받을 권리와 어머니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 계층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이 풍부한 인간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한 책임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 연장 보육은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가 필요한 시간이나 야근 혹은 밤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근무시간 동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육으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주간 보육(07:30-19:30)을 받고 그 이후의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 받는 것으로 야간 보육은 보육아동을 22:30이후까지, 24시간 보육은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받는 보육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1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에 맡기고 장기간 출장 및 출타로 인해 받는 보육을 말한다.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시간 연장 보육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학부모와 교사와 원장의 인식을 고찰하여 시간 연장 보육의 당사자인 아동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한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아동과 보육교사 비율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 여부, 연장보육에 대한 만족도 여부,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 여부,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 여부, 행정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한 본 연구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간 연장 보육으로 학부모의 경우는 시간 연장 보육을 통한 노동시간 확보 또는 다용도의 시간 활용이 가능하여 시간 연장 보육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추가 보육시간의 증가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와 비슷한 결과로 시간 연장 보육으로 발생하는 보육교사들의 노동시간 증가가 보육교사들의 만족도를 저하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보육시간에 대한 할증 수당 등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거나 또는 인센티브 등의 제공

방안 모색과 함께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대체휴일 제공 또는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하는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지 않고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은 현재의 보육료가 적절하여 연장보육에 찬성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은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시간 연장 보육의 운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학부모들과 보육교사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에서 자녀 양육 문제는 이제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점차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보육은 영유아들의 보호·교육 받을 권리와 여성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써 모든 아이들의 풍부한 인간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안전한 보호아래 자라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며 단순한 보호 기능을 넘어 보다 유익한 교육의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의 자녀 양육에 있어 자신의 편안함이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 자녀에 헌신해야 한다는 기존에 관념에서 벗어나 여성들 역시 자신을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미생활, 사회봉사 등의 다양한 사회생활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가정의 자녀양육 기능을 대행해 줄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최정희, 2008).

급격하게 환경이 변화하고 다양한 가치체계가 공존하는 현 상황에서 국가는 개인의 존중과 복지사회 현실이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강대옥, 2006).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기혼 여성들의 경제 활동의 참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되었고, 가구당 평균 자녀수의 감소, 편부모 가정의 증가와 같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 가정 내에서 자녀 양육의 점차 어려워짐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보육 사업은 지난 1991년 영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보육사업 확충 3개년 계획(1995~1997) 등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어린이집이 성장을 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 영유아교육법이 실시된 해에 3,690개소였던 어린이집 개소 수는 1998년 17,605 개소로 7년 사이에 4.6배나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1999년 18,768개소, 2000년 19,276 개소, 2010년에는 국공립 2,034개소, 법인 10,468개소, 민간(법인 외, 민간 개인) 14,677개소, 부모 74개소, 가정 19,367개

소, 직장 401개소 등 2011년 이후에도 어린이집의 양적 확대와 어린이집의 질적 제고 및 보육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라는 측면에서 어린이집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레이상의 법령개정과 어린이집 확충 3개년 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1998년에는 장애 전담 어린이집 강화, 민간 어린이집 교재 교구비 지원, 보육료 특별 소득공제의 신설 시, 연말 정산 시 보육료 소득 공제액 확대 등의 실시되었고, 1999년에는 어린이집 설치 절차의 간소화로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어린이집이 양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초래했다(제주보육 50년사,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업 모(母)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어린이집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선택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종일제 보육시간만으로는 취업모의 근무시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정해져 있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부모님들의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유금미, 2009). 예를 들어, 출장이 잦고 근무 시간이 고정되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 교대 근무 하는 직장인, 야간 근무하는 직장인, 여러 분야의 형태의 일을 하는 상인들, 오전 9시에 출근해서 4~6시 사이에 퇴근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간이나 일이 가능한 근로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강문희 외, 2000). 또한 보호자의 예기치 않는 질병, 사고 등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인해 해체 가정의 증가에 따라 부모들의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유아들이 늘고 있다(선경식, 2001).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부모의 역할과 가정의 기능을 지지해줄 수 있는 어린이집이나 다양한 근무 형태 및 근무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길 바라게 되었다(황윤경, 2008). 이처럼 시간 연장 형이나 24시간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증대되어 가고 있으나 현실적인 여건이 그 욕구에 충분히 응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4월 현재 전국에서 시간 연장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 현원은 1,373,555명이며 실제 시간 연장 반을 이용하는 아동 현원은 39,438명이며, 시간 연장 반을 맡고 있는 교사의 수는 5,799명이다. 제주도의 시간 연장

보육을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아동현원은 1,787명이며, 시간 연장 반을 맡고 있는 교사의 수는 73명이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 모들이 현재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간이 자신의 근무시간에 비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짧은 보육시간으로 인해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도움을 주지 못하는 점에서 보육시간의 운영도 보호자의 욕구에 맞추어 다양성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황윤경, 2008). 따라서 시간 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요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현재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운영체계가 보육아동 부모와 보육교사의 욕구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체제는 부모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1)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보육교사의 수가 적당하다고 인식하는가?

(2)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프로그램¹⁾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3)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인식 하는가?

1) 영유아기 유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제반 교육목표의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제반 학습 경험의 조직과,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여 활용할 것인가 하는 평가의 과정을 포함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모든 교수-학습 경험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커다란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은 만5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연령 및 발달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기초하여 확장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역(건강, 영양, 안전)과 부모들의 복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2011년 표준보육프로그램)

(4)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운영²⁾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가?

(5)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가?

2)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1)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의 수가 적당하다고 인식하는가?

(2)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가?

(3)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가?

(4)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운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가?

(5)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가?

3. 용어의 정의³⁾

1) 시간 연장 어린이집

시장·군수가 시간 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한 어린이집으로 시간 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여 시간 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지원을 받거나 근무수당(종일반 보육교사 연장근무/단시간 보육교사 채용)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으로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 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이

2) 일과 운영이라 함은 유아의 전인 발달과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것으로 교육대상과 내용의 통합과 교육환경과의 통합, 교육방법과의 통합 운영으로 볼 수 있다.(2011년 표준보육프로그램)

3) 여기에서 용어의 정의는 2012년 보건복지부 출간 보육사업안내를 참조하였음.

다.

2) 시간 연장 보육교사⁴⁾

보육교사 1, 2, 3급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하여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이며, 시간 연장 보육교사는 어린이집의 정원 범위 내에서 최대 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3) 학부모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 연장 보육을 하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을 둔 부모이다.

4) 시간 연장 보육 프로그램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19:30부터 최대 24:00까지 시간 연장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 프로그램이다.

5) 시간 연장 보육 시간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19:30부터 최대 24:00까지 이루어지는 보육시간이다(단, 토요일 보육시간은 15:30~24:00까지).

6) 시간 연장 보육료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초과하여 19:30부터 24:00까지 보육하는 시간의 보육료는 시간당 2,700원, 장애아동은 3,700원이며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하며 시간 연장 보육료는 시간 연장(월 60시간만 지원),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한다.

7) 시간 연장 보육 정원

4) 지원 교사 수는 시, 군, 구에서 판단, 2005년도까지 3명이상을 지원받던 시설은 기존 지원교사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간 연장 보육인건비 지원은 시간연 장반을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아동으로 시간연 장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연장 보육아 동대 교사의 비율은 0세 영아일 경우 3:1이며 영유아는 5:1을 원칙으로 하되, 유아로만 편성된 경우 7:1로 조정할 수 있다. 단 시간 연장 미 지정 시설의 경우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의 일반적 사항

1) 보육의 개념

보육이란 아동들이 보호·교육받을 권리와 어머니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이 속한 가정의 사회 계층과 어머니의 취업 여부를 떠나 모든 아동들이 풍부한 인간관계 속에서 심리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며 이를 위한 책임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국가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임재택, 1997). 또한 단순한 보호의 기능을 넘어 보다 유익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사회적 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육의 개념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게 규정되어 왔는데 그 출발은 기존의 탁아 개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을 위탁 한다’는 의미의 탁아는 전통적으로 어머니의 역할로 여겨지는 아동의 양육을 개별적인 사유로 인하여 어머니가 아닌 다른 대상에서 위임시키는 것으로 보호자의 질병, 기타 사정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아동을 보호하는 보충적 차원, 개별적 차원으로 그 기능과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1991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 제2조 2항의 어린이집에 대한 정의에서 보면, ‘보육’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린이집의 문제를 개별 부모나 가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상의 것으로 사회나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보게 되었으며 그 기능에 있어서도 ‘보호나 교육이냐’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부모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단순한 보호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교육이라는 차원으로 강조하게 되었다. 대상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이는 아동을 독자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는 사회의 한 구

성원으로서 인식하는 것으로 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보호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공인숙, 2000).

이러한 보육 개념의 변화를 임재택(1997)은 80년대 중반 이후의 전반적인 사회·민주화 추세,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와 생존권 회복을 위한 노동운동의 차원과 비교적 임금수준과 학력이 높은 사무직과 전문직 여성노동자들의 평등의식과 자아실현을 토대로 한 여성운동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다고 보며(임재택, 1997), 결국 보육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최정희, 2008).

2) 보육과 교육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보육과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별개의 것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이는 보육을 단순히 보호의 차원에서 국한시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석(1994)은 이러한 보육과 교육의 인식 차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2-1> 보육과 교육의 차이

구분	보육	교육
특징	- 사회 복지 프로그램	- 교육적 서비스
	-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설립	- 중, 상류층 자녀를 위해 설립
	- 결손 가정을 위한 서비스	- 정상 가정을 위한 서비스
	- 자선단체와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	- 학교법인 또는 연구단체에서 운영
	- 공공 재정 충당	- 사교육비 충당
	- 연중, 하루 종일 ⁵⁾ 보호	- 하루에 3~4시간 정도 교육
방향	- 어린이의 보호와 양육	-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
	- 정해진 가치규범을 따르게 하는 것	- 가치의 선택 및 의사 결정의 장려
	- 가족 및 가정 기능의 대행	- 가족 및 가정 기능의 지원
	- 집단주의 또는 사회주의 행동 규범화	- 개성과 자율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행동 규범화

5) 영영아(0세~12개월)는 보육교사 1명당 영영아3명, 영아(13개월~24개월)는 보육교사 1명당 영아5명, 영아(24개월~36개월)는 보육교사 1명당 영아7명, 유아(만3세)는 보육교사 1인당 유아15명, 유아(만4세~만5세)는 보육교사 1명당 유아20명으로 정해져 있으며, 농어촌 지역이거나 농어촌 특례지역에서는 각 나이별 반별로 영영아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에서는 2명씩 추가하여 반을 구성할 수 있으며 만3세, 만4세, 만5세는 3명을 추가로 반을 구성할 수 있다.

출처 : 임재택(1997).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그러나 박희재(2011)의 연구에서 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가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법령차이로 설립의 인가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담당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다음의 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2>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차이

	어린이집	유치원
근거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형	국. 공립 직장 법인 및 민간 가정 및 부모협동	국립 공립 사립
설립방법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가	시, 도 교육감이 인가
설립취지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조장에 기여
실내면적	1인당 4.29㎡이상	1인당 3.3㎡
내용	사회관계, 의사소통, 자연탐구, 예술경험, 신체운동, 기본생활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
대상연령	0세~12세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만 3세~취학 전 유아
시간	종일제/시간 연장 /24시/ 방과 후	반일제/종일제
학급편제	보육사업안내	시, 도교육감

출처 : 박희재(2011)

영유아는 발달 특성상 보호와 교육 중 어느 한쪽이 아니라 보호적 요구와 교육적 요구를 모두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보육과 교육으로 구분되는 이원화된 유아 서비스 체제는 영유아의 보육적 요구와 교육

적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는 비효율적 체제라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공인숙, 2000).

주기능이 보호 위주이든 교육 위주이든 간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주요 목적은 영유아의 건강과 위생, 안전 등 그리고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다 (김광웅, 1997). 특히 영유아기는 성장과 발달의 변화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므로 어떠한 보호적 노력이나 교육적 시도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아동이 보호와 교육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 양자를 모두 원한다는 사실은 “아동의 학습 개념, 습관, 태도를 모르고서는 아동을 보호할 수 없고 아동을 돌보는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임재택, 1997)는 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육과 교육을 분리하는 양분 논리는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 두 기능을 조정·통합하는 개념이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추세에 있다. 보호·양육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통합한다는 의미로 만든 ‘educare’라는 신 용어를 사용하여 미래의 교육서비스 및 보육서비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educare’의 개념은 점차로 보편화 될 것이며 유아교육 제도의 발전과 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서영숙, 2004).

2. 시간 연장 보육의 개념과 필요성

1) 시간 연장 보육의 개념

시간 연장 보육은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가 필요한 시간이나 야근 혹은 밤늦게 까지 일하는 부모들의 근무시간 동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보육으로 야간보육 및 24시간 보육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주간 보육(07:30-19:30)을 받고 그 이후의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을 받는 것으로 야간 보육은 보육아동을 22:30이후까지, 24시간 보육은 다음날 오전 7시 30분까지 받는 보육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1개월 이내에 보육시설에 맡기고 장기간 출장 및 출타로 인해 받는 보육을 말한다(보건복지부, 2004 보육사업안내).

2003년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에서는 보육시간별 보육유형 중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로 구분하다가 서울시에서 2003년 부처 ‘야간 및 24시간

보육시설'이란 용어 대신에 '시간 연장 보육시설'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보육사업안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은 해당 어린이집의 주간보육 아동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간에 다른 어린이집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능하며, 별도의 교사를 두어야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국공립 및 정부지원 비영리법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간 연장 보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자를 신규로 선정하거나 재 위탁계약을 하며 기 수탁자에 대한 재 위탁 심사 시에도 시간 연장 보육을 실시한 운영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시간 연장 보육은 아동을 24시간 보육을 할 경우에는 24시간 동안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부모와의 연락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한다(보건복지부, 2010 보육사업안내).

따라서 시간 연장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내 귀가할 수 없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육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것은 보육원 같은 시설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보호시설로서 보호자인 부모가 영유아들을 방치하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맞벌이를 하는 가정의 자녀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전인적 발달을 도울 수 있고,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안심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사회참여를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영유아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보건복지부, 2008 보육사업안내).

2) 시간 연장 보육의 기능 및 필요성

시간 연장 보육의 기능은 일반 보육의 기능과 비교하여 볼 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따라서 일반 보육의 기능을 살펴보면서 시간 연장 보육의 기능을 이해하고자 한다. 박세경(2010)은 아동발달을 위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영유아의 건강한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정서적발달의 지원은 포괄적 보육서비스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했으며, 아동발달 관련 실증 연구들이 밝히고 있듯이 생의 초기 특히 출생에서부터 3세까지는 안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에서 다양하

고 긍정적인 학습기회를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포괄적 보육서비스는 부모와 가족의 참여를 통해 아동의 발달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고 했다. 부모 지원을 위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보육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한데, 양육태도나 양육기술 등을 전달하는 부모교육이 부모의 수동적 참여를 통한 서비스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이라고 보면, 부모위원회 같은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 부모의 참여는 전체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과정뿐만 아니라 개별아동의 발달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요구하도록 하였다.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개별가족의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보육서비스 내에서 직접 제공할 수 있고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도모하여 제공할 수 있으며, 보육서비스 이외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가족의 최저 생활의 보장이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역할과 기능으로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과 가족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의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강하고 아동과 가족발달의 책임을 지역사회가 공유함으로써 가족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증진하기 위해 포괄적 보육서비스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명하고 지역사회자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채널을 마련하며 각종 서비스 대상아동과 가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핵심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다. 지역사회의 복지를 위하여 복지자원간의 협의체 구축 및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협력회의 등을 통하여 전수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표갑수(1995)는 보육의 기능을 문제예방의 기능으로 산업화가 가져온 사회발전이나 경제개발의 역기능 현상의 하나로 가족기능의 약화를 들었고, 이에 따라 아동의 보육은 약해진 가족의 기능을 보충해주고 강화해주는 역할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기능을 한다고 했다.

보호의 기능으로는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당한 경우, 가정에 결함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의 환경이 아동의 양육에 부적당한 경우(놀이시설이 없고, 주민의 문화적 수준이 낮은 지역, 불건전한 영업장소)에 보호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정에서 제공되는 안정감, 위험물에서의 보호, 건강관리, 영양관리, 적당한 성장기회의 제공 등 보호, 감독, 자극 등이 성인과의 지속적인 관계 내에서 주어지고 이러한 기능은 대리모와의 따뜻한 인간적인 관계에서 얻어지며, 육체적인 보호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교육적 기능으로는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로만 그치지 않고 발달에 필요한 바람직한 경험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아동의 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및 언어의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이나 활동을 제공하고 계획하여 교육적 프로그램을 강화 내지 병행하여 아동에게 최대한 교육적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가정의 지원 및 보상의 기능으로 부모의 양육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 복지 측면에서 도움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했다.

아동보육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능으로 일반아동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및 특수한 문제(시간 연장, 방과 후 아동)를 지닌 계층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하며 획일적인 프로그램의 제공보다는 이들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이 보충적으로 주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조직기능으로는 영유아의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용하며(장인협, 1993),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는 물론 가정의 기능을 보충하거나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위영희, 2011).고 했다. 아동 및 가족, 지역사회의 관계가 유지·강화되는 것으로 아동의 보호·교육을 통한 가정의 복지를 실현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육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시간 연장 보육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외에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취업여부와 근로형태 등에 따른 다양한 보육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전광현, 2006).

이나영(2002)은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제공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 여성

의 경제활동의 참가율은 1960년대의 26.8%에서 1985년에는 40.6%로 약 2배가 증가하였으며, 1997년 이후 49%수준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통계청, 2006). 자녀의 양육 실태(통계청, 2003)를 살펴보면, 0-2세는 부모가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3-4세는 부모가 44.4%로 나타났고, 5-6세는 부모가 24.1%, 어린이집이 75.9%로 나타나 아동의 나이가 올라갈수록 부모의 양육에서 어린이집의 양육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현재 여성의 산업사회 참여직종이 확대되고 남녀 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육아휴직제도, 산전·후 휴가제 등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제한적 조건일 점차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의한 노동력이 질적 향상으로 여성의 사회화가 한층 확대 되었다.

보건복지부(2006)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로 대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부부와 자녀만 함께하는 핵가족으로 변화되어 가족의 아동보육 기능이 약화되었다. 우리나라 핵가족화는 1960년에는 5.7명에서 1980년 4.5명으로 줄어들고 1995년 3.3명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2008년 현재 핵가족비율은 72.6%이고, 직계가족에서 3세대이상 확대가족은 6.8%로 이는 가족 주기 상 자녀 양육기 단계에 있는 가족의 여성취업을 보완해 줄 가족차원의 자원이 크게 고갈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대가족제도는 부모가 불가피한 사유로 자녀를 돌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부모 등 가족구성원에 의한 아동이 양육될 수 있었는데 반해, 현재는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할 때 가정 밖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가정 밖에서 조차 해결할 수 없으면 방치되거나 방임되어져 아동의 정서적, 사회적인 성숙은 물론 아동의 보육기능이 약화되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시간이용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조숙경(2001)은 부모의 별거·이혼·사망 등의 증가로 인한 결손가정이 증가되었고, 한 부모가정과 미혼가정이 늘고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한 사회화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아동보육문제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그들의 안정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24시간 보육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24시간 보육 이용 동기를 살펴본 조숙경(2001)의 연구에서 별거·이혼·사망 등 가정적인 문제에 의한 이용 동기가 많이 나타났으며, 조희숙(2005)의 연구에서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가정형태를 살펴본 결과, 한 부모가정 특히 부

자 가정이 가장 많았다. 이관환(2002)의 연구에서는 24시간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형태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한 부모가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해체가정의 증가에 따른 보육기능의 강화와 필요성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24시간 보육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김미영, 2007).

우리나라는 IMF외환위기를 겪고 사회 각 부분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고용의 불안정과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힘든 여건에 놓여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대부분의 일의 성격을 보면 일용직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자녀를 늦게까지 돌봐줄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된다. 부에서 저소득층 자격에 대해 일정한 요건이 되면 기본생활수급자로 지정하여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주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따라 보육료의 40%를 지원하고 보호자가 60%를 부담하고 있으나,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건복지부, 2006 보육사업안내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가속화되는 산업화로 인해 근로형태가 다양화되었다. 출퇴근시간과 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장인, 야간과 새벽까지 근무해야 하는 서비스직, 24시간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 등과 같이 하루 중 어느 시간이나 일이 가능한 다양한 근로형태가 증가하고 있다고 강문희 외(2000)의 연구에서 논하고 있고, 또한 노동부의 조사(2004)에 의하면 현재 제조업근로자 전체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57.2%로 과반수를 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제조업·생산직은 근무시간이 저녁이나 한밤중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숙박업, 요식업 및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게 되었다.

방치된 아동의 서비스란 방과 후 보육을 의미하거나 특히 아동의 방과 후 시간을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을 말하며, 어린이가 신체적으로 안전하다고 해서 잘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린이보호회(1992)가 조사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방과 후 실태조사에 의하면 18%의 어린이들이 방과 후에 혼자 비디오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인 경우는 사례가 빈번할 것이다.

3. 시간 연장 보육의 특징 및 현황

1) 시간 연장 보육의 특징

시간 연장 보육의 특징으로 보호 예방적 서비스와 교육적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보호적 예방적 서비스에 대해 우리나라 영유아보육법은 그 목적을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육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로 밝히고 있다. 예방적 서비스로서는 인격 형성을 위해 아동에게 심신 발달에 위험을 주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기타 환경적인 장애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발육을 위하여 모든 가능한 시설과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정기자, 2009).

교육적 서비스로는 보건복지부(2000년)가 규정한 시간 연장 보육 프로그램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째, 주간 보육 이외의 시간이 주된 운영 시간이다. 둘째, 사회·정서적 안정, 기본생활습관, 건강 증진과 언어 발달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다. 셋째, 비구조적인 활동을 구성한다. 넷째, 보육과 교육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 특히, 저녁시간에 또래 교사로 하여금 어머니와 같은 정서를 가지고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다. 다섯째, 저녁시간에 아동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안전문제 등 교사가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활용하게 하였다.

2) 우리나라 시간 연장 어린이집현황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 사업은 1991년에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양적, 질적으로 급격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이러한 어린이집의 양적 팽창은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자녀를 마음 편하게 맡기고 직장에 전념하도록 하여 가정복지에 일조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는 국가, 지방자치 단체, 법인, 개인이 할 수 있다. 보육의 다양한 서비스 차원에서 2000년 이후에는 특수 어린이집, 즉 영아

전담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통합 어린이집,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는데, 시간 연장 형 어린이집⁶⁾은 시간제 어린이집, 휴일 어린이집, 방과 후 어린이집⁷⁾ 등이 있다. 특히, 시간 연장 어린이집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3> 전국 시간 연장어린이집 일반현황 (단위 : 개소, 명)

년도	어린이집수	아동총정원	아동현원	시간 연장 아동현원	시간 연장교사
2009	35,554	1,482,225	1,174,907	28,546	3,374
2010	38,020	1,556,765	1,277,909	37,162	4,675
2011	39,842	1,621,948	1,348,729	43,681	5,513
2012	40,709	1,666,913	1,373,555	39,438	5,799

출처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보육포털 보육통계자료, 2012. 4월 기준

<표 2-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시간 연장 아동수를 살펴보면, 2009년도에는 전체적으로 28,546명에서 2012년도에는 39,438명으로 증가하였고, 시간 연장 교사도 2009년에 3,374명에서 2012년에는 5,799명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표 2-4> 전국 방과 후 어린이집 일반 현황 (단위 : 개소, 명)

년도	어린이집수	아동총정원	아동현원	방과 후 현원	방과 후교사
2009	35,554	1,482,225	1,174,907	19,237	187
2010	38,020	1,556,765	1,277,909	14,311	145
2011	39,842	1,621,948	1,348,729	11,78	106
2012	40,709	1,666,913	1,373,555	10,513	118

출처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보육포털 도서관 보육통계자료, 2012. 4월 기준

6) 24시간 보육(종일보육+시간 연장), 시간 연장 보육, 야간보육(시간 연장+새벽보육), 휴일보육을 칭한다.
 7) 지원대상아동은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을 말하며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 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이상 이용하는 경우이다. 방과 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과 후 보육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전체적으로 19,237명에서 2012년에는 10,513명으로 전체적으로 많은 감소를 보였고, 방과 후 교사도 2009년에 187명에서 2012년에는 118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보육서비스 다양화의 차원에서 영아전담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등도 있지만,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3) 외국의 시간 연장 어린이집 현황

(1) 일본의 시간 연장과 야간의 어린이집 현황

일본의 영유아 보육 사업은 약 120년 전부터 시작되어 발전되어 왔으나 다른 나라와는 다른 일반적인 공공재정의 적극적 지원과 공공기관으로서의 독특한 관리체제인 보육제도를 채택하였다. 또한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영유아 어린이집의 관련 법규와 정책에 모델이 되고 있다. 일본의 시간 연장(일명 베이비 호텔)은 1989년 출생율의 저하로 인한 시간 연장 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구축되어 왔다(정기자, 2009).

또한 일본사회에서는 사회의 진출, 여성의 역할에 대한 태도 변화 등으로 아동 보육체계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갖게 되었다. 특히 최근 10년간 계속되는 어린이 출생의 감소로 인한 자녀들의 문제는 그 심각성으로 인해 더욱 보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보육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일본의 보육제도는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많은 발전을 보았다. 1947년 탁아소에서 보육소로 개칭하고, 1980년 초에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허가제로 1989에는 출생률이 저하로 인한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간 연장 형 어린이집으로 구축이 되어 왔다(조숙경, 2001).

야간 및 24시간 어린이집인 베이비 호텔은 1960년대에 큰 도시의 호텔 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원래는 호텔 손님들의 자녀들을 짧은 시간동안 보살피 주는 형태였다. 후생성은 베이비 호텔을 첫째, 24시 운영. 둘째, 밤샘 양육을 제공함. 셋째, 시간당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규정짓고 있다. 베이비 호텔은 영아 양육에 이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어린이집들은 낮은 질적 수준 때문에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러나 베이비 호텔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통성 있는 시간의 밤샘보육, 6개월 이하의 영아들을 위한 보육을 제공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가받은 아동 어린이집으로 제공해 줄 수 없는 욕구를 만족시켜 주었다(이진선, 2007).

또한, 일본은 1981년의 베이비 호텔에서 다수의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보육 관계자 외에도 일반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2000년 가네가와현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인해서 더욱 세상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 일본의 수도(首都)만 90개정도의 베이비 호텔이 있었으며, 이러한 어린이집은 대도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사망 사건이 계속되었다. 즉 1970년부터 약 13년간 100건이 넘는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베이비 호텔을 포함한 무인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 이것으로 인하여 일본 후생성은 아동복지법을 1981년 개정하여 해당 어린이집 현장 조사권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지도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981년대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도기준이 부 적합한 상태에서 개선 권고가 내려졌지만 매년 전체의 3분의 2, 그 이상의 어린이집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로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 2000년 2월에 가네가와현에서 경영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도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약 25년간의 현장 조사도 결국 그 사건을 발생한 호텔의 폐쇄이외에 어떠한 사업정지명령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현장 조사도 철저하게 하도록 하였고, 보육사의 인원이나 유자격자의 배치 등의 기준도 정하게 되었다. 2005년 1월부터는 인가의 어린이집에 대하여 그 설치 신고를 낸 어린이집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인가의 어린이집 지도 감독 기준에 이른다고 하는 증명서 제도로서 만들었다.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지도 내용 등이 이용자들로 알 수 있게 되었다(정기자, 2009).

(2) 중국의 시간 연장 현황

중국은 기숙보육 프로그램으로 바위위엔(bao-yu-yuan)이 있다. 중국 어린이집에 있는 영유아의 5%가량이 시간 연장 어린이집 즉 기숙 보육을 이용한다. 이 기숙 보육 프로그램은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더 보편적이고 4세 이상 연령뿐만

아니라 영아, 걸음마 아기를 위한 다양한 연령의 기숙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중국의 기숙 보육 프로그램은 문화혁명기 동안 인민 자유 병사들의 자녀, 당 지도자의 자녀, 특별한 재교육, 혹은 작업이 할당된 도시 부모들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기숙보육 프로그램은 당 지도자의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야간작업을 하거나 저녁에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에만까지 확대되어 제공되고 있다(양옥승 외, 1998).

(3) 스웨덴 시간 연장 현황

1998년 학교법에 의해 스웨덴의 유아학교 및 보호체제에서 탁아기관(Day Care Center)과 시간제 집단(Part-time Group)이라는 용어는 없어지고, 유아학교(Pre-School)체제에 편입되었다. 이에 따라 스웨덴의 유아교육 및 보호를 위한 기관은 유아학교(Pre-School), 가정탁아(family day care homes), 개방유아학교(open pre-school), 취학 전 교실(pre-school class), 여가활동(leisure-time center)로 구분된다.

유아학교는 유아들이 종일 또는 시간제로 다닐 수 있으며, 개원 시간은 기관마다 다르며, 시골지방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매일 8시간에서 12.5시간 정도 운영하고 있다. 저녁 및 밤 동안에 시간 연장 서비스는 작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요구는 제한적이다. 가정탁아는 가정 탁아모가 자신의 집에서 12세까지의 아동들을 돌보고, 가정 탁아모는 자신의 자녀를 포함하여 최대 10명의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다양한 시간대로 돌보게 되며 주말이나 밤에도 아동들을 돌보기도 한다.

최근 들어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유아학교 및 여가활동 센터활동이 확장됨에 따라 가정 탁아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1998년 현재 가정 탁아는 유아기 아동의 12%, 학령기 아동의 6%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정기자, 2009).

(4) 이스라엘의 시간 연장 보육

이스라엘의 키부츠 교육은 출생부터 이루어지는데 생후 4일째 되는 날 신생아는 키부츠의 공동 육아원으로 보내 공동생활을 통한 집단 교육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보육원에서의 공동생활은 전문적인 교육과 정식 훈련을 이수한 키부츠 출신의 여성인 보모에 의하여 보살펴지며, 영아들은 이곳에서 만 1세까지 생활한다. 영아의 어머니는 하루에 5-6회 정도 보육원으로 와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데 소요시간은 1회에 50분내지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영아가 한 살이 되면 보육원을 떠나 탁아소로 옮기게 된다. 반일제로 운영되는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서 오후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요구하여 오후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기능을 하는 두 개의 프로그램 모델이 개발되었다. 그 하나는 오전에 영유아를 맡고 교사들이 오후까지 계속 맡거나 다른 교사가 교대하여 맡아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오전 프로그램이 끝난 후 버스를 타고 가까운 지역사회 센터로 이동하여 여성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오후반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취직 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유아원과 유치원의 많은 수가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고, 반일제로 운영하는 이들 교육 프로그램들의 오후 시간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양옥승, 1998).

4) 제주도 시간 연장 어린이집

<표 2-5>에서와 같이 제주도 시간 연장 보육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1,323명에서 2010년 1,862명, 2011년 2,159명, 2012년도에는 1,787명으로 늘어났으며, 보육교사수도 2009년 60명에서 2010년 74명, 2011년 77명, 2012년 73명 등으로 늘어났다.

<표 2-5> 제주도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일반현황 (단위 : 개소, 명)

년도	어린이집수	아동총정원	아동현원	시간 연장 아동현원	시간 연장
2009	501	28,059	23,456	1,323	60
2010	525	29,210	24,809	1,862	74
2011	552	30,540	25,513	2,159	77
2012	568	31,783	24,851	1,787	73

출처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보육포털 보육통계자료, 2012. 4월 현재

<표2-6>에 제주도 방과 후 보육아동을 살펴보면, 2009년도 124명에서, 2010년 37,162명, 2011년 43,681명, 2012년도에는 39,438명으로 2009년 이후 2010년부터 매우 많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방과 후 교사도 2009년에 3,374명, 2010년 4,675명, 2011년 5,513명, 2012년에는 5,799명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6> 제주도 방과 후 통합 어린이집 일반 현황(단위 : 개소, 명)

년도	어린이집수	아동총정원	아동현원	방과 후 현원	방과 후
2009	35,554	1,482,225	1,174,907	124	3,374
2010	38,020	1,556,765	1,277,909	37,162	4,675
2011	39,842	1,621,948	1,348,729	43,681	5,513
2012	40,709	1,666,913	1,373,555	39,438	5,799

출처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보육포털 도서관 보육통계자료, 2012. 4월 현재

위와 같이 도표들을 살펴보면 보육하고자 하는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전문적인 보육교사나 어린이집이 현저하게 부족함을 알 수 있고, 다양한 업종에 근무하고자 하는 맞벌이부부들이나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을 알 수 있다.

4. 선행연구의 고찰

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 및 현황, 교사 만족도등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시간 연장 어린이집, 즉 시간제, 야간 및 24

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연구들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까지 선행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황윤경(2008)의 연구에서 시간 연장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인식을 바탕으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와 시간 연장 보육 수혜자인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여 시간 연장 보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었는데 연구 대상은 대전광역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시간 연장 보육교사로서 업무상의 어려운 점으로 시간 연장 프로그램으로 나타났고, 시간 연장 보육시 가장 어려운경우로는 담당하는 영아가 아플 때라고 응답했다. 시간 연장 영유아를 위해 중점을 두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과 안전이라고 대답한 교사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부모의 인식에서 현재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간 연장 보육을 하고 있어서라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시간 연장 보육 서비스를 위해 보육교사 자질이 향상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유금미(2009)는 시간 연장 보육 실태를 알아보고 시간 연장 보육을 운영하는 원장과 보육교사 및 학부모의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만족의 정도와 요구는 어떠한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간 연장 보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시간 연장 보육의 수로 시간 연장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수는 1명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시간 연장 보육의 반 구성은 혼합 반 구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의 계기로는 학부모 권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 연장 보육의 운영 실태로는 시간 연장 보육의 실시한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 연장 담당자는 시간 연장 보육교사(인건비보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의 장소는 주간 보육 실 겸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인식에서 시간 연장 보육의 만족도는 “만족한다.” 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 연장 보육의 안전관리의 필요성에서는 “필요하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급여의 적절성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적인 지원의 필요성으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박희재(2011)의 연구를 보면 시설운영에 대한 평가에서 주간보육의 과중한 업무, 또한 근무시간연장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과중되어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와 2010년 최신화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탄력적인 교사의 근무시간 인정’과 ‘교사 인건비 인상’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으며 행정부에 바라는 사항으로는 ‘자원 봉사 및 인력개발지원’과 ‘다양한 시간 연장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두고 있다. 보육교사 인식에서는 시간 연장 근무시간이 하루 6시간(휴식1시간미포함)이 적당하다고 하였고, 교사 급여에 대해서는 시간당 5,000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다. 시간 연장 교사의 주된 역할을 보면 안전지원과 영양 등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아동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인식에서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근무형태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인식에서 보육교사 1명당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아동의 수는 3명이라고 답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는 ‘늦은 퇴근’과 ‘근로의 불규칙’을 들었으며 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함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인식에서는 대부분 만족하고 있지만 보육교사의 인식에서는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족과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을 나타냈고, 원장의 인식에서는 과중한 업무 및 시간 연장 교사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았지만 아직까지 제주도의 시간 연장에 대한 연구를 찾지 못한바 본 연구자는 제주도의 시간 연장 보육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고찰하여 시간 연장 보육의 당사자인 아동들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주시에 거주하는 학부모로써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제주시 지역에 있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측정도구인 설문지 구성의 적절성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일간에 걸쳐 제주시에 위치한 민간 시간 연장 어린이집 2곳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내용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것은 수정 또는 제거하였으며, 문헌연구를 종합하여 문항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였다.

제주도 지역의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학부모 및 보육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유금희, 2009; 이진선, 2007; 황윤경, 2008)를 참고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초안을 구성하였고, 어린이집 2곳에 대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의미전달이 애매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용어 또는 문항의 구성 그리고 순서 등을 수정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질문지의 질문문항은 일반적 사항 9문항, 인식조사 사항 10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1> 설문지 구성요소

구분	구성내용	문항수
일반사항	개인적	6문항
	근무시간*업무시간*근무형태	3문항
인식사항	보육아동정원	1문항
	보육교사 수	1문항
	프로그램	1문항
	필요성	2문항
	보육시간	2문항
	행정적 지원	2문항
	일과운영	1문항

2. 연구절차 및 자료처리

본 조사는 2012년 5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제주시에 위치한 시간 연장 민간어린이집 및 시간 연장 가정 어린이집 5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질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배포하고 회수한 결과 보육교사 질문지 100부 중 93부, 학부모 질문지 200부 중 200부를 회수하였다. 이중에서 표기 누락된 보육교사용 질문지 3부와 학부모용 질문지 7부는 통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학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자녀수를 살펴보면 <표 3-2>과 같다.

<표 3-2> 학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성별	남	20	10.5
	여	173	89.5
	계	193	100
학력	고졸	28	14.9
	대학졸(3년제 이하)	79	42.0
	대학졸	70	37.2
	대학원졸	11	5.9
	계	188	100.0
연령대	20대	87	45.1
	30대	79	40.9
	40대상	27	14.0
	계	193	100
자녀수	1명	73	39.0
	2명	82	43.9
	3명	30	16.0
	기타	2	1.1
	계	187	100.0

조사대상 학부모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20명(10.5%), 여성 173명(89.5%)이었으며, 학부모의 연령대는 20대가 87명(30.7%), 30대가 79명(27.9%), 40대 이상

이 27명(9.5%)의 순이었다. 자녀수는 2명이 82명(43.9%), 1명이 73명(39.0%), 3명이 30명(16.0%)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3>과 같다.

<표 3-3> 보육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결혼여부	미혼	46	51.1
	기혼	44	48.9
	합계	90	100.0
학력	고졸	9	10.0
	대학 졸(3년제 이하)	39	43.3
	대학 졸	42	46.7
	대학원 졸	0	0.0
	합계	90	100.0
연령대	20대	47	52.2
	30대	27	30.0
	40대상	16	17.8
	계	90	100.0
어린이집 재직기간	1년 미만	13	14.4
	1년 이상 - 3년 미만	40	44.4
	3년 이상 - 5년 미만	26	28.9
	5년 이상	11	12.2
	합계	90	100.0
보육교사경력	1년 미만	11	12.2
	1년 이상 - 3년 미만	40	44.4
	3년 이상 - 5년 미만	23	25.6
	5년 이상	16	17.8
	합계	90	100.0

보육교사의 성별분포에서는 90명 모두가 여성이었으며, 결혼여부는 미혼이 46명(51.1%), 기혼이 44명(48.9%)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졸이 42명(46.7%), 대학 졸(3년제 이하)이 39명(43.3%), 고졸이 9명(10.0%)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는 보육교사의 연령대는 20대가 47명(52.2%), 30대가 27명(30.0%), 40대 이상이 16명(17.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재직기간 분포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40명(44.4%)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5년 미만”이 21명(23.3%), “5년 이상”이 16명(17.8%), “1년 미만”이 13명(14.4%)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보육교사의 교사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40명(44.4%)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이 21명(23.3%), “3년 이상~5년 미만”이 18명(20.0%), “1년 미만”이 11명(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인식도

1) 학부모의 직장생활 관련 특성

학부모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표 4-1>과 같다.

<표 4-1> 학부모의 직장생활 관련 특성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	자녀양육과 건강	106	55.5
	가사일	31	16.2
	가족의 이해	19	9.9
	업무적성과 스트레스	34	17.8
	기타	1	0.5
	계	191	100.0
근무형태	자영업	39	21.5
	맞벌이	123	68.0
	부만 전업	11	6.1
	모만 전업	8	4.4
	계	181	100.0
근무시간	주 30시간	18	9.6
	주 30시간 이상 - 주40시간미만	43	23.0
	주 40시간 이상 - 주 50시간미만	76	40.6
	주 50시간 이상 - 주 60시간미만	50	26.7
	계	187	100.0

응답자인 학부모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자녀양육과 건강”이 106명(55.5%)을 차지하였고, “일에 대한 적성과 스트레스”가 34명(17.8%), “가사일”이 31명(16.2%), “가족의 이해”가 19명(9.9%)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의 근무형태는 “맞벌이”가 123명(68%), 그 다음으로 “자영업”이 39명(21.5%), “부(父)만 전업”이 11명(6.1%), “모(母)만 전업”이 8명(4.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의 근무시간은 “1주(週)에 40시간 이상~주 50시간미만”이 76명(40.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주(週)에 50시간 이상~주 60시간미만”이 50명(26.7%), “1주(週)에 30시간 이상~주 40시간미만”이 43명(23.0%), “1주(週)에 30미만”이 18명(9.6%)의 순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학부모의 보육과 관련된 내용은 <표 4-2>와 같다.

<표 4-2> 학부모의 보육과 관련한 특성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어린이집 선택기준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질	80	43.0
	보육비용	27	14.5
	영양과 건강관리	37	19.9
	집과 어린이집의 거리	40	21.5
	기타	2	1.1
	계	186	100.0
위탁시간	19시30분 - 20시30분	54	28.4
	19시30분 - 21시30분	43	22.6
	19시30분 - 22시30분	37	19.5
	19시30분 - 23시30분	35	18.4
	19시30분 - 24시	21	11.1
	계	190	100.0
위탁횟수	주 1회	5	2.6
	주 2회	19	10.1
	주 3회	27	14.3
	주 4회	33	17.5
	주 5회	105	55.6
	계	189	100.0
위탁사유	자녀를 볼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133	70.4
	보육비용이 저렴해서	41	21.7
	시간 연장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1	0.5
	안전해서	9	4.8
	기타	5	2.6
	계	189	100.0

학부모들이 시간 연장 어린이집 선택 시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교육환경과 교사의 자질”이라는 응답이 80명(43.0%)을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집과 어린이집의 거리”가 40명(21.5%), “영양과 건강관리”가 37명(19.9%)을 차지하였으며, 보육비용이 27명(14.5%), 기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이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자녀를 주로 맡기는 시간은 “19시30분~20시30분”이 54명(28.4%)으로 가장 많았고, “19시30분~21시30분”이 43명(22.6%), “19시30분~22시30분”이 37명(19.5%), “19시30분~23시30분”이 35명(18.4%), 그리고 “19시30분~24시까지”가 21명(11.1%)의 순으로 많았다.

학부모들이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횟수는 “주(週) 5회”가 105명(55.6%)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주(週) 4회”가 33명(17.5%), “주(週) 3회”가 27명(14.3%), “주(週) 2회”가 19명(10.1%), “주(週) 1회”가 5명(2.6%)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녀를 볼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가 133명을 전체의 70.4%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비용이 저렴해서”가 41명(21.7%)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가 14명(8%)을 차지하고 있다.

2) 보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인식수준

보육과 관련된 학부모의 인식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3>과 같다.

시간 연장반 아동과 보육교사의 비율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81명(42.4%)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부적당”이 40명(20.9%), “대체로 적당”이 36명(18.8%), “매우 적당”이 20명(10.5%), “매우 부적당”이 14명(7.3%)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들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82명(43.2%), “약간 만족”이 38명(20.0%), “약간 불만족”이 35명(18.4%), “매우 불만족”이 22명(11.6%), “매우 만족”이 13명(6.8%)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불만족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육 프로그램으로는 “활동중심의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이 각각 15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주제중심의 프로그램”이 14명(23.3%), “발달중심의 프로그램”이 12명(20%), “실제 보육시간에 적용했던 프로그램”이 4명(6.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보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인식수준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아동과 교사 비율의 적정성	매우 부적당	14	7.3
	대체로 부적당	40	20.9
	보통	81	42.4
	대체로 적당	36	18.8
	매우 적당	20	10.5
	합계	191	100.0
보육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불만족	22	11.6
	약간 불만족	35	18.4
	보통	82	43.2
	약간 만족	38	20.0
	매우 만족	13	6.8
	합계	190	100.0
필요한 프로그램	활동중심의 프로그램	15	25.0
	주제중심의 프로그램	14	23.3
	특별프로그램	15	25.0
	발달중심의 프로그램	12	20.0
	실제 보육시간에 적용했던 프로그램	4	6.7
	합계	60	100.0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86명(45.5%), “만족”이 70명(37%), “불만족”이 14명(7.4%), “매우 만족”이 13명(6.9%), “전혀 불만족”이 6명(3.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93명(50.0%), “적절”이 59명(31.7%), “매우 적절”이 20명(10.8%), “매우 부적절”이 3명(1.6%)의 순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시간 연장 보육의 합리적인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밤 9시까지”와 “밤 12시까지”가 각각 5명(33.3%)을 차지하였고, “밤 10시까지”와 “밤 11시까지”가 각각 2명(13.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보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인식수준 (계속)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6	3.2
	만족하지 않는 편	14	7.4
	보통	86	45.5
	만족하는 편	70	37.0
	매우 만족	13	6.9
	합계	188	100.0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	매우 적절하지 않다	3	1.6
	다소 적절하지 않다	11	5.9
	보통이다	93	50.0
	적절하다	59	31.7
	매우 적절하다	20	10.8
	합계	186	100.0
부적절시 적합한 운영시간	밤 9시까지	5	33.3
	밤 10시까지	2	13.3
	밤 11시까지	2	13.3
	밤 12시까지	5	33.3
	기타	1	6.7
	합계	15	100.0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86명(45.0%), “적절”이 50명(26.2%), “매우 적절”이 29명(15.2%), “다소 부적절”이 20명(10.5%)의 순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료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적정 보육료에 대해서는 “시간당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이 각각 6명(20.7%)을 차지하였고, “기타”가 5명(17.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일과(日課)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76명(39.6%), “필요”가 63명(32.8%), “매우 필요”가 31명(16.1%), 그리고 “불필요”와 “전혀 불필요”가 각각 11명(5.7%)의 순을 차지하였다.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일과(日課)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 중에 1순위에는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이 54명(5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이 17명(18.7%)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에는 “안전한 생활지도”가 28명(32.2%), “정서적 안

정”이 23명(26.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언어발달과 소통능력”이 22명(25.6%)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 안정”이 18명(20.9%),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이 17명(19.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 보육과 관련한 학부모의 인식수준(계속)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일과운영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11	5.7
	필요 없다	11	5.7
	보통	76	39.6
	필요하다	63	32.8
	매우 필요하다	31	16.1
	합계	191	100.0
운영필요시 다루어야할 내용 (순위1)	기본생활과 습관 형성	54	59.3
	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	17	18.7
	안전한 생활지도	12	13.2
	정서적 안정	3	3.3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3	3.3
	언어발달과 의사소통능력	1	2.2
	학습지도와 인지발달	0	0.0
	합계	90	100.0
운영필요시 다루어야할 내용 (순위2)	기본생활과 습관 형성	2	2.3
	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	14	16.1
	안전한 생활지도	28	32.2
	정서적 안정	23	26.4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9	10.3
	언어발달과 의사소통능력	6	6.9
	학습지도와 인지발달	4	4.6
	예능 및 창의성 교육	1	1.1
합계	87	100.0	
운영필요시 다루어야할 내용 (순위3)	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	2	2.3
	안전한 생활지도	3	3.5
	정서적 안정	18	20.9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17	19.8
	언어발달과 의사소통능력	22	25.6
	학습지도와 인지발달	9	10.5
	예능 및 창의성 교육	15	17.4
	합계	86	100.0

시간 연장 보육운영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가 68명(35.4%), “보통”이 66명(34.4%), “매우 필요”가 52명(27.1%)을 차지하였고, “불필요”와 “전혀 불필요”는 각각 3명(1.6%)을 차지하였다. 필요한 행정지원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41명(35.0%)로 가장 많았고, “행정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23명(19.7%),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22명(18.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4> 행정지원의 필요여부(학부모)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행정지원의 필요여부	전혀 필요 없다	3	1.6
	필요 없다	3	1.6
	보통	66	34.4
	필요하다	68	35.4
	매우 필요하다	52	27.1
	합계	192	100.0
행정지원이 필요한 사항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22	18.8
	학부모 교육	14	12.0
	행정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23	19.7
	어린이집과 병원, 경찰서 등의 기관과의 연계	10	8.5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41	35.0
	기타	7	6.0
	합계	117	100.0

2. 시간 연장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식도

1) 보육교사의 자격증 보유 여부

응답자의 보육교사 중 1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유한 보육교사는 39명(43.3%),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유한 보육교사는 45명(50.0%), 3급 보육교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7명(7.8%),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4명(4.4%), 2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22명

(24.4%), 특수교사 자격을 소유하고 있는 보육교사는 1명(1.1%)을 차지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의 개수는 1개가 63명(70.0%), 2개가 26명(28.9%), 3개가 1명(1.1%)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5> 보육교사의 자격보유 여부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1급 보육교사	없음	51	56.7
	있음	39	43.3
	합계	90	100.0
2급 보육교사	없음	45	50.0
	있음	45	50.0
	합계	90	100.0
3급 보육교사	없음	83	92.2
	있음	7	7.8
	합계	90	100.0
1급 유치원 정교사	없음	86	95.6
	있음	4	4.4
	합계	90	100.0
2급 유치원 정교사	없음	68	75.6
	있음	22	24.4
	합계	90	100.0
특수교사	없음	89	98.9
	있음	1	1.1
	합계	90	100.0
보유자격증 개수	1	63	70.0
	2	26	28.9
	3	1	1.1
	합계	90	100.0

그리고 어린이집의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4-6>과 같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주체에 대한 분포는 민간어린이집이 72명(80.9%)이었고, 가정어린이집이 17명(19.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린이집의 보육정원 분포에서는 “39명 이하”가 29명(32.2%)로 가장 많았고, “49명 이하”가 27명(30.0%), “20명 이하”가 18명(20.0%), “50명 이상~99명 이하”가 13명(14.4%), “100명 이상”이 3명(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6> 시간 연장 보육 어린이집의 현황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운영주체	민간어린이집	72	80.9
	가정어린이집	17	19.1
	합계	89	100.0
보육정원	20인	18	20.0
	39인	29	32.2
	49인	27	30.0
	50인 이상-99인	13	14.4
	100인 이상	3	3.3
	합계	90	100.0
시간 연장 학급갯수	1개	28	31.5
	2개	16	18.0
	3개	10	11.2
	4개	9	10.1
	5개 이상	26	29.2
	합계	89	100.0
시간 연장 이용 아동수	5명 이하	26	29.2
	6-10명	29	32.6
	11-15명	22	24.7
	16-20명	6	6.7
	21-25명	2	2.2
	26명 이상	4	4.5
	합계	89	100.0
시간 연장 급여의 적정성	매우 부적절	29	33.0
	다소 부적절	26	29.5
	보통	23	26.1
	적절	10	11.4
	매우 적절	0	0.0
	합계	88	100.0

어린이집의 시간 연장 학급 수는 “1개”가 28명(31.5%)로 가장 많았고, “5개 이상”이 26명(29.2%), “2개”가 16명(18.0%), “3개”가 10명(11.2%), “4개”가 9명(10.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6~10명”이 29명(32.6%)로 가장 많았고, “5명 이하”가 26명(29.2%), “11~15명”이 22명(2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현재 받고 있는 시간 연장 급여의 적절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이 29명(33.0%), “다소 부적절”이 26명

(29.5%), “보통”이 23명(26.1%), “적절”이 10명(11.4%)의 순으로 나타났다.

2) 보육과 관련한 보육교사의 인식수준

보육과 관련된 보육교사의 인식수준의 분석결과는 <표 4-7>과 같다.

<표 4-7> 보육교사의 보육과 관련한 인식수준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아동과 교사 비율의 적정성	매우 부적당	8	9.0
	대체로 부적당	18	20.2
	보통	48	53.9
	대체로 적당	12	13.5
	매우 적당	3	3.4
	합계	89	100.0
보육 프로그램 만족도	매우 불만족	14	15.6
	약간 불만족	16	17.8
	보통	44	48.9
	약간 만족	12	13.3
	매우 만족	4	4.4
	합계	90	100.0
필요한 프로그램	활동중심의 프로그램	5	16.1
	주제중심의 프로그램	5	16.1
	특별프로그램	10	32.3
	발달중심의 프로그램	6	19.4
	실제 보육시간에 적용했던 프로그램	2	6.5
	도움이 되는 지침서	1	3.2
	기타	2	6.5
	합계	31	100.0

시간 연장 아동과 보육교사의 비율이 적당한지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통”이 48명(53.9%)로 가장 많았고, “대체로 부적당”이 18명(20.2%), “대체로 적당”이 12명(13.5%), “매우 부적당”이 8명(9.0%), “매우 적당”이 3명(3.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44명(48.9%), “약간 불만족”이 16명(17.8%), “매우 불만족”이 14명(15.6%), “약간 만족”이 12명(13.3%), “매우 만족”이 4명(4.4%)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경우에 필요한 보육 프로그램으로는 “특별 프로그램”이 10명(32.3%)으로 가장 많았고, “발달중심의 프로그램”이 6명(19.4%), “주제중심의 프로그램”과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이 각각 5명(16.1%), “실제 보육시간에 적용했던 프로그램”이 2명(6.5%)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과 “매우 불만족”이 각각 26명(28.9%), “불만족”이 22명(24.4%), “만족”이 14명(15.6%), “매우 만족”이 2명(2.2%)의 순으로 나타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보육교사의 보육과 관련한 인식수준 (계속)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않음	26	28.9
	만족하지 않는 편	22	24.4
	보통	26	28.9
	만족하는 편	14	15.6
	매우 만족	2	2.2
	합계	90	100.0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	매우 적절하지 않다	30	33.3
	다소 적절하지 않다	15	16.7
	보통이다	24	26.7
	적절하다	16	17.8
	매우 적절하다	5	5.6
	합계	90	100.0
부적절시 적합한 운영시간	밤 9시까지	17	37.0
	밤 10시까지	6	13.0
	밤 11시까지	1	2.2
	밤 12시까지	0	0.0
	기타	22	47.8
	합계	46	100.0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이 30명(33.3%), “보통”이 24명(26.7%), “적절”이 16명(17.8%), “다소 부적절”이 15명(16.7%), “매우 적절”이 5명(5.6%)의 순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시간 연장 보육의 합리적인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기타”를 제외하고 “밤 9시까지”가 17명(37.0%), “밤 10시까지”가 6명

(13.0%)으로 나타났다.

<표 4-7> 보육교사의 보육과 관련한 인식수준(계속)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보육료의 적정성	매우 적절하지 않다	26	29.2
	다소 적절하지 않다	23	25.8
	보통이다	32	36.0
	적절하다	5	5.6
	매우 적절하다	3	3.4
	합계	89	100.0
부적정시 적정한 보육료	시간당 3천원	3	6.3
	시간당 4천원	16	33.3
	시간당 5천원	6	12.5
	시간당 6천원	17	35.4
	기타	6	12.5
	합계	48	100.0
일과운영의 필요성	전혀 필요 없다	14	15.7
	필요 없다	6	6.7
	보통	32	36.0
	필요하다	29	32.6
	매우 필요하다	8	9.0
	합계	89	100.0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32명(36.0%), “매우 부적절”이 26명(29.2%), “다소 부적절”이 23명(25.8%)의 순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료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적정 보육료에 대해서는 “시간당 6천원”이 17명(35.4%), “시간당 4천원”이 16명(33.3%) “시간당 5천원”이 6명(12.5%)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일과(日課)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32명(36.0%), “필요”가 29명(32.6%), “전혀 불필요”가 14명(15.7%)의 순을 차지하였다.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일과(日課)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 중에 1순위에는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이 21명(5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이 6명(16.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에는 “정서적 안정”이 10명(27.0%), “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과 “안전한 생활지도”가 각각 8명(21.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3순위는 “정서적 안정”과 “언어발달과 소통능력”이 각각 9명(24.3%), “학습지도와 인지발달”이 8명(21.6%), “”예능 및 창의성 교육“이 6명(16.2%),”친구관계 및 사회활동“이 5명(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8> 어린이집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

변수	구분	빈도	구성비
운영필요시 다루어야할 내용 (순위1)	기본생활과 습관 형성	21	56.8
	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	6	16.2
	안전한 생활지도	4	10.8
	정서적 안정	4	10.8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0	0.0
	언어발달과 의사소통능력	2	5.4
	학습지도와 인지발달	0	0.0
	합계	37	100.0
운영필요시 다루어야할 내용 (순위2)	기본생활과 습관 형성	0	0.0
	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	8	21.6
	안전한 생활지도	8	21.6
	정서적 안정	10	27.0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6	16.2
	언어발달과 의사소통능력	2	5.4
	학습지도와 인지발달	3	8.1
	예능 및 창의성 교육	0	0.0
합계	37	100.0	
운영필요시 다루어야할 내용 (순위3)	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	0	0.0
	안전한 생활지도	0	0.0
	정서적 안정	9	24.3
	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5	13.5
	언어발달과 의사소통능력	9	24.3
	학습지도와 인지발달	8	21.6
	예능 및 창의성 교육	6	16.2
합계	37	100.0	

시간 연장 보육운영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가 32명(35.6%), “보통”이 28명(31.1%), “매우 필요”가 22명(24.4%)을 차지하였다.

필요한 행정지원으로는 “보육시설 환경개선”이 16명(29.6%)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 교육”이 15명(27.8%),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이 9명(16.7%)의 순으로 나타났다

3. 학부모 집단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

1)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아동과 보육교사 비율의 걱정성 여부,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 여부, 시간 연장보육에 대한 만족도 여부,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걱정성 여부, 시간 연장 보육료의 걱정성 여부,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 여부, 행정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9>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평균차이 분석결과와 같다.

<표 4-9>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결과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확률 (p값)
아동과 교사비율	남	20	3.55	.826	2.288	0.023*
	여	169	2.98	1.072		
프로그램만족	남	20	3.45	.887	2.365	0.019*
	여	168	2.86	1.066		
시간 연장 보육만족	남	20	3.45	.759	0.369	0.712
	여	167	3.38	.840		
보육시간 걱정여부	남	20	3.45	.759	-0.038	0.970
	여	164	3.46	.817		
시간 연장 보육료걱정여부	남	20	3.05	1.050	-1.748	0.082
	여	169	3.45	.957		
시간 연장보육 필요여부	남	20	3.15	.933	-1.510	0.133
	여	170	3.51	1.022		
행정지원 필요여부	남	20	3.65	.813	-1.135	0.297
	여	170	3.87	.901		

주)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

(1) 시간 연장 학습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2.288이고, 유의확률(p값)이 0.023로 나타나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학습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남성의 평균값은 3.55점이고, 여성의 평균값은 2.98점으로 남성이 통계적 유의 수준 하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아동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2.365이고, 유의확률(p값)이 0.019로 나타나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남성의 평균값은 3.45이고, 여성의 평균값은 2.86점으로 남성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보다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0.369이고, 유의확률(p값)이 0.712로 나타나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남성의 평균값은 3.45점이고, 여성 평균값은 3.38점으로 학부모들의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4)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성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0.038이고, 유의확률(p값)이

0.970로 나타나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지각 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성에 대해서는 남성의 평균값은 3.45이고, 여성의 평균값은 3.46점으로 학부모 모두가 보육 운영 시간이 적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간 연장 보육 보육료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1.748이고, 유의확률(p값)이 0.082로 나타나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남성의 평균값은 3.05이고, 여성의 평균값은 3.45점으로 학부모 모두가 보통 이상이며, 여성이 남성보다는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1.510이고, 유의확률(p값)이 0.133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남성의 평균값은 3.15이고, 여성의 평균값은 3.51점으로 학부모 모두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더 필요하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의 성별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1.135이고, 유의확률(p값)이 0.297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남성의 평균값은 3.65이고, 여성의 평균값은 3.87점으로 학부모들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부모 집단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학부모의 근무형태에 따른 행정지원 필요여부, 학력에 따른 아동과 교사비율에 대한 걱정성 여부, 그리고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료 걱정여부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0> 학부모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와 같다.

<표 4-10> 학부모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행정지원 필요여부	자영업	38	4.03	.753	4.490/ 0.005**
	맞벌이	123	3.92	.836	
	부만 전업	11	3.27	1.009	
	모만 전업	8	3.13	1.126	
	합계	180	3.87	.868	
아동과 교사비율	고졸	28	3.36	1.193	2.742/ 0.045*
	대학졸(3년제 이하)	78	2.78	1.136	
	대학졸	69	3.14	.809	
	대학원 졸	11	3.09	1.044	
	합계	186	3.02	1.045	
시간 연장 보육료 걱정여부	고졸	28	3.57	1.200	7.240/ 0.000**
	대학졸(3년제 이하)	78	3.71	.870	
	대학 졸	70	3.06	.899	
	대학원 졸	11	2.91	.831	
	합계	187	3.40	.980	

주)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

(1) 학부모의 근무형태에 따른 행정지원 필요여부

“학부모의 근무형태에 따른 행정지원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F값이 4.490이고, 유의확률(p값)이 0.005로 나타나 학부모의 근무형태에 따른 행정지원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사후검정인 자영업과 부만 전업, 모만 전업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

다. 즉 자영업일수록 행정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2)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과 보육교사 비율의 적정성 여부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과 보육교사 비율의 적정성 여부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F값이 2.742이고, 유의확률(p값)이 0.045로 나타나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아동과 보육교사 비율의 적정성 여부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학 졸(3년제 이하)은 고졸과 대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 졸(3년제 이하)일수록 아동과 보육교사의 비율이 적정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 여부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 여부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F값이 7.240이고,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나타나 학부모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 여부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학 졸(3년제 이하)은 대학 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 졸(3년제 이하)일수록 시간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에 대해 더욱 적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보육교사 집단에 대한 평균차이 검정

1)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평균차이 검정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와 보육교사 비율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 여부,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만족도 여부,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 여부, 행정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1>은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결과이다.

<표 4-11>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결과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확률 (p값)
아동교사 비율	미혼	45	2.80	.815	-0.213	0.831
	기혼	44	2.84	.987		
프로그램 만족	미혼	46	2.63	1.040	-0.973	0.333
	기혼	44	2.84	1.010		
시간 연장 보육만족	미혼	46	2.26	1.201	-1.006	0.317
	기혼	44	2.50	1.045		
보육시간 적정여부	미혼	46	2.28	1.294	-1.323	0.316
	기혼	44	2.64	1.241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여부	미혼	46	2.30	1.171	0.216	0.830
	기혼	43	2.26	.928		
시간 연장 필요여부	미혼	45	2.84	1.205	-2.321	0.023
	기혼	44	3.41	1.085		
행정지원 필요여부	미혼	46	3.52	1.110	-1.656	0.101
	기혼	44	3.89	.970		

주)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

(1) 시간 연장 학급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에 대한 차이 검정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0.213이고, 유의확률(p값)이 0.831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학급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학부모 미혼의 평균값은 2.80점이고, 기혼의 평균값은 2.84점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정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0.973이고, 유의확률(p값)이 0.333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미혼의 평균값은 2.63이고, 기혼의 평균값은 2.84점으로 모두가 보

통이하로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정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1.006이고, 유의확률(p 값)이 0.317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미혼의 평균값은 2.26점이고, 기혼의 평균값은 2.50점으로 보육교사들의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시간 연장 보육 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차이 검정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1.323이고, 유의확률(p 값)이 0.316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성에 대해서는 미혼의 평균값은 2.28이고, 기혼의 평균값은 2.64점으로 보육교사 모두가 시간 연장 보육 운영시간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시간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에 대한 차이 검정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0.216이고, 유의확률(p 값)이 0.830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미혼의 평균값은 2.30이고, 기혼의 평균값은 2.26점으로 보육교사 모두가 시간 연장보육료가 부적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에 대한 차이 검정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

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2.321이고, 유의확률(p값)이 0.023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미혼의 평균값은 2.84이고, 기혼의 평균값은 3.41점으로 미혼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 반면에 기혼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7)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차이 검정

“보육교사의 결혼여부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값이 (-)1.656이고, 유의확률(p값)이 0.101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미혼의 평균값은 3.52이고, 기혼 평균값은 3.89점으로 보육교사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보육교사 집단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의 만족도, 보육시간의 적정여부,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2>는 보육교사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와 같다.

(1)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행정지원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F값이 5.896이고, 유의확률(p값)이 0.004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학 졸(3년제 이하)은 대학 졸과 고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 졸(3년제 이하), 대학 졸, 고졸 모두가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학 졸(3년제 이하)은 대학 졸, 고졸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표 4-12> 보육교사의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시간 연장 보육만족도	고졸	9	2.00	1.118	5.896/ 0.004**
	대학졸(3년제 이하)	39	2.82	1.167	
	대학 졸	42	2.05	.962	
	합계	90	2.38	1.128	
보육시간 적정여부	고졸	9	2.00	1.118	5.733/ 0.005**
	대학졸(3년제 이하)	39	2.95	1.297	
	대학 졸	42	2.10	1.144	
	합계	90	2.46	1.273	
시간 연장 보육필요 여부	고졸	9	3.67	.707	14.535/ 0.000**
	대학졸(3년제 이하)	39	3.67	.982	
	대학 졸	41	2.49	1.121	
	합계	89	3.12	1.176	

주)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

(2)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여부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F값이 5.733이고, 유의확률(p값)이 0.005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학 졸(3년제 이하)은 대학 졸과 고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 졸(3년제 이하), 대학 졸, 고졸 모두가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여부에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학 졸(3년제 이하)은 대학 졸, 고졸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3)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

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F값이 14.535이고, 유의확률(p값)이 0.000으로 나타나 보육교사의 학력에 따른 시간 연장의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대학 졸은 대학 졸(3년제 이하)과 고졸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대학 졸은 상대적으로 대학 졸(3년제 이하), 고졸보다는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 낮게 나타났다.

5.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카이제곱 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성별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3> 학부모와 보육교사간의 성별과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과 같으며, 카이제곱 값은 10.146이고, 유의확률이 0.001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성별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성별과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구분			학부모	보육교사	계	x ² /df/p
성별	남	빈도	20	0	20	10.146/1/0.001**
		비율	7.1%	0.0%	7.1%	
	여	빈도	171	90	261	
		비율	60.9%	32.0%	92.9%	
계	빈도	191	90	281		
	비율	68.0%	32.0%	100.0%		

주)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학력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검정결과, 카이제곱 값은 7.730이고 유의확률이 0.052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학력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학력과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구분		학부모	보육교사	계	x ² /df/p	
학력	고졸	빈도	28	9	37	7.730/3/0.052
		비율	10.1%	3.2%	13.3%	
	대학졸 (3년제 이하)	빈도	79	39	118	
		비율	28.4%	14.0%	42.4%	
	대학졸	빈도	70	42	112	
		비율	25.2%	15.1%	40.3%	
	대학원졸	빈도	11	0	11	
		비율	4.0%	0.0%	4.0%	
계	빈도	188	90	278		
	비율	67.6%	32.4%	100.0%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시간 연장 보육 프로그램 간에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표 4-15> 시간 연장 보육 프로그램과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

구분		학부모	보육교사	계	x ² /df/p	
시간 연장 프로그램	활동중심의 프로그램	빈도	15	5	20	7.444/6/0.282
		비율	16.5%	5.5%	22.0%	
	주제중심의 프로그램	빈도	14	5	19	
		비율	15.4%	5.5%	20.9%	
	특별 프로그램	빈도	15	10	25	
		비율	16.5%	11.0%	27.5%	
	발달중심의 프로그램	빈도	12	6	18	
		비율	13.2%	6.6%	19.8%	
	적용했던 프로그램	빈도	4	2	6	
		비율	4.4%	2.2%	6.6%	
	도움이 되는 지침서	빈도	0	1	1	
		비율	.0%	1.1%	1.1%	
	기타	빈도	0	2	2	
		비율	.0%	2.2%	2.2%	
계	빈도	60	31	91		
	비율	65.9%	34.1%	100.0%		

카이제곱 검정결과, 카이제곱 값은 7.444이고, 유의확률이 0.282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시간 연장 보육 프로그램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시간 연장 보육의 합리적인 운영시간에 대해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6>과 같다. 카이제곱 검정결과, 카이제곱 값은 23.322이고,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시간 연장 보육의 합리적인 운영시간에 대한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시간 연장 보육의 합리적 운영시간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구분		학부모	보육교사	계	x ² /df/p	
보육적 합운영 시간	밤 9시까지	빈도	5	17	22	23.322/4/0.000**
		비율	8.2%	27.9%	36.1%	
	밤 10시까지	빈도	2	6	8	
		비율	3.3%	9.8%	13.1%	
	밤 11시까지	빈도	2	1	3	
		비율	3.3%	1.6%	4.9%	
	밤 12시까지	빈도	5	0	5	
		비율	8.2%	.0%	8.2%	
	기타	빈도	1	22	23	
		비율	1.6%	36.1%	37.7%	
	전체	빈도	15	46	61	
		비율	24.6%	75.4%	100.0%	

주)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수준에 대해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7>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시간 연장 보육료 대한 카이제곱 검정과 같으며, 카이제곱 값은 6.611이고, 유의확률이 0.158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수준에 대해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시간 연장 보육료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구분		학부모	보육교사	계	x2/df/p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 요금 수준	시간당 3천원	빈도	6	3	9	6.611/4/0.158
		비율	7.8%	3.9%	11.7%	
	시간당 4천원	빈도	6	16	22	
		비율	7.8%	20.8%	28.6%	
	시간당 5천원	빈도	6	6	12	
		비율	7.8%	7.8%	15.6%	
	시간당 6천원	빈도	6	17	23	
		비율	7.8%	22.1%	29.9%	
기타	빈도	5	6	11		
	비율	6.5%	7.8%	14.3%		
전체		빈도	29	48	77	
		비율	37.7%	62.3%	100.0%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필요에 대한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8>와 같다.

<표 4-18> 필요한 행정지원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구분		학부모	보육교사	계	x2/df/p	
행정 지원 필요	교사의 자질향상 교육	빈도	22	9	31	12.955/ 5/ 0.024
		비율	12.9%	5.3%	18.1%	
	학부모 교육	빈도	14	15	29	
		비율	8.2%	8.8%	17.0%	
	철저한 관리감독	빈도	23	3	26	
		비율	13.5%	1.8%	15.2%	
	관계기관과의 연계	빈도	10	4	14	
		비율	5.8%	2.3%	33.3%	
	어린이집의 환경개선	빈도	41	16	57	
		비율	24.0%	9.4%	33.3%	
	기타	빈도	7	7	14	
		비율	4.1%	4.1%	8.2%	
전체		빈도	117	54	171	
		비율	68.4%	31.6%	100.0%	

주)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필요한 행정지원의 차이에 대한 카이제곱 검정과 같으며, 카이제곱 값은 12.955이고, 유의확률이 0.024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수준에 대해 분포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평균차이 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아동과 보육교사 비율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 여부,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만족도 여부,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 여부, 행정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9>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평균차이 분석결과와 같다.

<표 4-19>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평균차이 분석결과

변수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값	유의확률 (p값)
아동과 교사비율	학부모	191	3.04	1.055	1.712	0.088
	보육교사	89	2.82	0.899		
프로그램 만족도	학부모	190	2.92	1.059	1.40	0.163
	보육교사	90	2.73	1.026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	학부모	189	3.37	0.844	7.419	0.000**
	보육교사	90	2.38	1.128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여부	학부모	186	3.44	0.825	6.693	0.000**
	보육교사	90	2.46	1.273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여부	학부모	191	3.40	0.973	8.708	0.000**
	보육교사	89	2.28	1.055		
시간 연장 필요여부	학부모	192	3.48	1.018	2.591	0.01*
	보육교사	89	3.12	1.176		
행정지원 필요여부	학부모	192	3.85	0.894	1.23	0.220
	보육교사	90	3.70	1.054		

주) **신뢰수준 99%, *신뢰수준 95%에서 유의함.

1) 시간 연장 학습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학습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1.712이고, 유의확률(p 값)이 0.088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학습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학습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에 대한 학부모의 평균값은 3.04이고, 보육교사의 평균값은 2.82점으로 일반적으로 보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1.40이고, 유의확률(p 값)이 0.163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평균값은 2.92이고, 보육교사의 평균값은 2.73점으로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간 연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3)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7.419이고, 유의확률(p 값)이 0.000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부모의 평균값은 3.37이고, 보육교사의 평균값은 2.38점으로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은 시간 연장 보육을 통한 노동시간 확보 또는 다용도의 시간 활용이 가능

하여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추가 보육시간의 증가 연장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보육시간에 대한 할증수당을 제공하거나 또는 인센티브 등의 제공방안과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

4)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성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6.693이고, 유의확률(p 값)이 0.000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평균값은 3.44이고, 보육교사의 평균값은 2.46점으로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의 시간 연장 보육만족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시간 연장 보육으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노동시간 증가가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5) 시간 연장 보육 보육료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8.708이고, 유의확률(p 값)이 0.000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성에 대해서는 부모의 평균값은 3.40이고, 보육교사의 평균값은 2.28점으로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하는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지 않고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은 현재의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여 시간 연장 보육에 찬성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은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기대수입보다 수입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기대수입과 현실적 수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6)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2.591이고, 유의확률(p 값)이 0.01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부모의 평균값은 3.48이고, 보육교사의 평균값은 3.12점으로 학부모들과 보육교사 모두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7)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차이 검정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t 값이 1.23이고, 유의확률(p 값)이 0.220으로 나타나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평균값은 3.85이고, 보육교사의 평균값은 3.70점으로 학부모들과 보육교사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분포하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 보육 현황을 알아보고, 시간 연장 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수요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으로는 현재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운영체계가 보육아동 부모와 보육교사의 요구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학부모들의 시간 연장 보육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 보육 및 보육시간 만족도, 시간 연장 프로그램의 필요여부 등과 보육교사와 아동비율의 적정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시간 연장 보육 어린이집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체계는 부모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라는 인식조사를 위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보육교사의 수가 적당한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운영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는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보육교사의 수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운영이 적당하다고 인식하는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는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표본의 구성에 있어서 전체 표본 수는 283명이며, 학부모가 193명, 보육교사가 90명으로 이루어졌다.

어린이집 운영주체에 대한 분포는 민간어린이집이 72명 이었고, 가정어린이집이 17명으로 대답했다. 보육정원은 “39명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 연장 학급 수는 “1개 반”이 가장 많았고, 시간 연장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 수는 “6~10명”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학부모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 20명, 여성 173명이 조사에 응해 주었고, 학부모의 연령대는 20대가 8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수는 2명이 8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점은 “자녀 양육과 건강”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근무형태는 “맞벌이”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의 근무시간은 “1주(週)에 40시간 이상~주 50시간미만”이 가장 많았다.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학부모가 8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료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적정 보육료에 대해서는 “시간당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이 각각 6명을 차지하였고, “기타”가 5명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반 아동과 보육교사의 비율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고, 학부모들의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불만족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육 프로그램으로는 “활동중심의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이 각각 15명(25.0%)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고 가장 많이 대답했다.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시간 연장 보육의 합리적인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밤 9시까지”와 “밤 12시까지”가 각각 5명(33.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고, 시간 연장 보육료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적정 보육료에 대해서는 “시간당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이 각각 6명(20.7%)으로 나타

났다.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일과(日課)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일과(日課)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 중에 1순위로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 운영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고, 필요한 행정지원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보육교사의 성별은 90명 모두가 여성이며, 결혼여부에서 미혼이 46명, 기혼이 44명으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 졸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보육교사의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재직기간 분포는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았고, 보육교사의 교사경력은 “1년 이상~3년 미만”이 가장 많았다. 보육교사가 현재 받고 있는 시간 연장 급여의 적절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적절”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시간 연장반 아동과 보육교사의 비율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으로 대답한 보육교사가 가장 많았고,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불만족하는 경우에 필요한 보육 프로그램으로는 “활동중심의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 시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시간 연장 보육의 합리적인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밤 9시까지”와 “밤 12시까지”가 적당하다고 대답하였다.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시간 연장 보육료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적정 보육료에 대해서는 “시간당 6천원”이 적당하다고 대답하였다.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일과(日課) 운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일과(日課) 운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 중에 1순위에는 “기본생활과 습관형성”이 가장 많았고, 필요한 행정지원으로는 “어린이집 환경개선”이 가장 많았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의 아동과 보육교사 비율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 여부, 시간 연장 보육에 대한 만족도 여부,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보육료의 적정성 여부,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성 여부, 행정지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로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학급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지각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에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학급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연장 학급의 아동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에 대한 학부모의 지각수준은 보통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해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성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시간의 적정성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성에 대해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성에 대해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하는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지 않고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

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해 학부모들과 보육교사 모두 필요하다 라고 했고,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한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검정한 결과, 학부모와 보육교사 간에는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 지각수준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해 학부모들과 보육교사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하면서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제주도 전 지역의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하지 못한바 제주도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시 지역에 분포하는 55곳의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조사하여 이 연구가 제주도 전 지역에 적용시키기에 무리가 있기에 조사범위를 확대한 후속연구를 할 기회가 있다면 제주도 전 지역의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원시설(국공립, 법인, 법인외)과 부모협동, 직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를 하여 제주도 어린이집의 발전과 향상된 보육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2. 정책 제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간 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와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수가 적당한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필요한지,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운영이 적절한지,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당한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간 연장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에게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미술놀이, 협동놀이 등과 같은 특별프로그램, 역할놀이 등과 같은 활동중심의 프로그램, 또는 주제중심의 프로그램 등의 개선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시간 연장 보육 만족도에 대해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학부모들은 시간 연장 보육을 통한 노동시간 확보 또는 다용도의 시간 활용이 가능하여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추가 보육시간의 증가 연장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보육시간에 대한 할증수당을 제공하거나 또는 인센티브 등의 제공방안과 대체인력 확보방안 등이 필요하다.

셋째, 시간 연장 보육시간 적정성에 대해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의 시간 연장 보육만족도의 결과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시간 연장 보육으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 증가가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시간 연장 보육료 적정성에 대해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하는 반면에 보육교사들은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지 않고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부모들은 현재의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여 시간 연장 보육에 찬성하고 있지만, 보육교사들은 노동시간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사들은 시간당 4~6천원이 적절하다고 한 반면에 부모는 3~6천원 범위에서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 보육교사들의 기대수익과 현실적 수익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육교사들의 기대수입과 현실적 수입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시간 연장 보육의 필요여부에 대해 학부모들과 보육교사 모두 필요하다고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이 보육교사보다 더욱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시간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의 필요여부에 대해 학부모들과 보육교사 모두가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어린이집의 환경개선과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마치면서 연구자가 무엇보다 제언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나 영아전담 어린이집처럼 시간 연장 전담 어린이집운영에 관해 논하고 싶다. 시간 연장 보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영유아들만 입소하는 형태의 것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시간에 대한 고민해결과 영유아들이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듯 무리 없는 어린이집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다.

아침 07:30부터 야간 24:00까지 보육이 이루어지는 형태로 교사들도 8시간 2교대로 배치하여 교사의 근무효율성을 높이고, 교사들에게는 근무시간 가중에 대한 부담이 없을뿐더러 근무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간 연장 전담 어린이집의 유용한 점은 남는 교실을 이용하여 다양한 휴게실 및 특별 활동을 위한 공간 활용을 하여, 영유아들에게 발달에 적합한 프로그램제공과 특별 프로그램을 유용하고 적절히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제언이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정책적으로 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면 위의 사항에 대한 보다 더 심도 있는 조사 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제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연구하도록 할 예정이다.

<참 고 문 헌>

- 강대옥(2006). 기관운영자의 통합교육 신념과 통합학급교사 지원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문희·김매희·이경희·정정옥(2000), 야간 및 24시 보육실태 및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2(1) 27-56.
- 공인숙(2000). 영유아보육론, 교육과학사.
- 김광웅(1997). 영유아보육론, 중앙적성출판사.
- 김미영(2007). 24시간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야간보육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2005). 보육교사 처우개선의 연구-성북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복(2004). 영유아보육 론, 형설출판사.
- 박삼섭(2007).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구로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세경(2010). 돌봄 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로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희재(2011).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운영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숙진(2004). 한국영유아 보육정책에 관한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2001~2012).
- 보건복지부 아이사랑 보육포털 보육통계자료(2012. 04).
- 보건복지부 표준보육프로그램(2011)
- 서영숙(2004). 영유아보육론, 양서원.
- 선경식(2001).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옥승(1998, 양옥승외). “세계의 보육제도” 양서원.
- 위영희(2011). 유아교육개론, 오래.

- 유가호(1999). 보육학개론, 서울 동문사.
- 유금희(2009). 보육시설 연장 근무실태 및 종사자와 학부모 인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희정 · 이미화(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과 후생복지에 따라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환(2002). 24시간 보육시설의 필요성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2001). 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연구: 야간 및 24시간 보육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희(2005). 아동보육론, 대왕사.
- 이순영(2008). 강원도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개선방안. 강원발전연구소.
- 이옥경(2003).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실태조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이정환·이경숙·이기숙·홍용희·박은혜·김희진(2003). 유아교육개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정숙(2001). 영유아보육론, 대학출판사.
- 이진선(2007). 시간 연장 형 보육시설의 운영체계개선방안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택(1997). 보육시설의 운영관리. 서울 양서원.
- 장인협(1993). 한국아동복지의 미래, 한국아동복지학회 제1호.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08 : 서울특별시.
- 전광현·순덕기·이숙영(2006). 24시간 보육시설 실태조사 및 정책 방안, 여성가족부 보육지원팀.
- 정기자(2009). 24시간 민간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한 보육시설장의 인식, 중앙대학교 사회개발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2004). 영유아보육론, 학지사.
- 조숙경(2001). 야간 및 24시간제 보육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희숙·김경신·박성미·박선훈(2005). 예비보육교사와 현직 보육교사의 교사역할

-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41집.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보육시설 이용 확대 방안(인터넷 자료, 2008) 중소기업근로자의 보육시설이용 확대방안 용역 보고서.
- 최미현 외 6인(1996). 영유아보육론, 창지사.
- 최은숙·박양자(2009). 농촌 탁아소의 효과 분석, 농학연구. 2(1). 서울대학교 농학연구소, 369-390
- 최정희(2008). 국. 공립 보육시설 위탁 시설에 관한 시설장의 인식.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종도(1980). 아동 복리사업의 동향, 동광 기독교아동복지회, 제67호, 7-17.
- 표갑수(200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출판.
- 한국여성개발원(2006).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유아교육학회(2003). 유아교육백서(1995년~2000년), 서울 양서원.
- 황미혜(2002). 보육시설 종사자의 포괄적 보육 서비스의 수행결정요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윤경(2008). 시간 연장 보육시설의 운영개선방안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art, L. O.(1980). "Mothering and teaching-Some significant distinctions", Current Topic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3: pp 47~64.
- Spodek, B.(1972), Staff Requirement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I. Gordon,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p.347.

Abstract

Daycare is a system to ensure the rights of the children to be protected and educated as well as the rights of the mothers who want to work. Within this system, irregardless of the social status and the mother's employment status, all children are made sure to be taken care of amongst the abundance of human relationships and grow up in health and happiness. It also means that the responsibility to make this happen lies not only on the individual capacity but on the part of the society and government. The extended hours of daycare centers refers to a policy where during the hours when parents have to work late or due to certain family circumstances, the children are protected safely at night as well as a 24 hour day care. In most cases, they receive day care during the week between (07:30-19:30) and more hours after that. Night care includes the time up to after 22:30, while a 24 hour day care extends into the hours of up to 7:30 a.m. the next morning. It also refers to daycare service where the parent or the guardian puts the child in the daycare center for more than one month due to a long business trip or a long term period of absence.

The intention of this researcher is to find out the actual current status of the extended hours daycare centers within the Jeju region and study into the awareness of the parents as well as the teachers and directors of such institutions so that ultimately, the children who are the actual recipients can be ensured of receiving a superior quality service

The conditions that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cluded, the question of ratio appropriateness of the number between parents, daycare center teachers and children, satisfaction rate regarding the extended hours program, satisfaction rate about the extended hours of daycare, appropriateness of the actual extended hours, appropriateness of the cost of

the extended hour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extended hours are really necessary and the necessity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All these factor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an average difference was analyzed. The summary of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the parents, due to the extended hours of the daycare, they were able to secure longer working hours and other usages of the time where they are free of the care of their own children which led to their high satisfaction rate of the day care hours. On the other hand, the day care center teachers showed a very low satisfaction rate regarding the additional extended hours of the day care center. In addition,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tended hours of the day care center, while the parents showed a high satisfaction rate, the teachers showed a relatively lower satisfaction rate. This is similar to the satisfaction rate regarding the extended hours. The reason behind the decrease of satisfaction rate appears to lie in the increase in the labor hours of the day care center teachers as a direct result of the extended hour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rate of the daycare center teachers, efforts to seek out a proper reimbursement method should be made in the form of a monetary compensation as per the increased working hours of the teachers or some sort of provision of other incentives along with provision of an alternative day off in direct relation to the additional hours or hiring of extra manpower is necessary.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extended hours, the parents felt that the cost of the additional hours was appropriate while the teachers felt that it was not appropriate and even seemed to think it was low. This seems to indicate that the parents are in agreement of the current extended hours because of the appropriate cost but the day care center teachers seem to feel that the expected pay is lower than the service rendered with the additional working hours.

Finally, as for the necessity of the administrativ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running of the additional extended hours of the day care centers, the parents and the day care center teachers both feel that it's necessary while further measures in upgrading the environment and training support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day care center teachers are needed.

설문지

학부모님의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지방지치)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 노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제주지역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종사자와부모의 인식비교연구]란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고자 합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도, 보육시간에 대한 충족도, 시간 연장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충족도, 영유아들을 돌 볼 수 있는 적절한 보육교사의 수, 적절한 보육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목적에만 이용될 것이므로 개인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며,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신 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설문에 응답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5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과

지도교수: 남진열

조 사 자: 김명희

5)기 타()

10. 귀하께서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 까지 입니까?

- 1)19:30~20:30까지 2)19:30~21:30까지
3)19:30~22:30까지 4)19:30~23:30까지
5)19:30~24:00까지

11. 귀하께서는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횟수는 주 몇 회나 되십니까?

- 1)주 1회 2)주 2회 3)주 3회 4)주 4회 5)주5회

12. 귀하께서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자녀를 돌 볼 적당한 사람이 없어서 2)보육비용이 저렴해서
3)시간연장 교육프로그램이 좋아서 4)안전해서
5)기타 ()

13. 현재 귀하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간 연장반 아동 비율과 보육교사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매우적당 2)대체로 적당 3)보통 4)대체로 부적당 5)매우 부적당

13-1. 적정하지 않다면, 아동 대 보육교사의 비율을 본인의 생각대로 적어 주십시오.

14. 시간 연장 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 프로그램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 하십니까?

- 1)매우 만족 2)약간 만족
3)보통 4)약간 불만족 5)매우 불만족

14-1.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 1)활동영역별로 제시된 활동중심의 프로그램(예: 쌓기놀이 영역활동, 역할놀이 영역활동 등)
2)주제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램
3)특별 프로그램(예:치료놀이, 미술놀이, 협동놀이 등)
4)발달 영역별로 제시된 발달 중심의 프로그램(예: 언어발달, 사회정서 발달 프로그램 등)

- 5)실제 시간 연장 보육시간에 적용했던 프로그램 모음집
- 6)프로그램 구성 및 계획에 도움이 되는 지침서
- 7)기타 ()

15.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시간연장보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2)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3)보통이다 4)만족하는 편이다
- 5)매우 만족한다

16.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간 연장 보육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매우 적절하다 2)다소 적절하지 않다
- 3)적절하다 4)다소 적절하다
- 5)매우 적절하다

16-1.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시간 연장 보육의 합리적인 운영시간은 몇 시까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밤 9시까지 2)밤 10시까지
- 3)밤 11시까지 4)밤 12시까지
- 5)24시간 개방 6)기타 ()

17. 현재 시간 연장 보육료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매우 적절하지 않다 2)다소 적절하지 않다
- 3)적절하다 4)다소 적절하다
- 5)매우 적절하다

17-1. 적절하지 않다면 얼마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시간 당 3,000원 2)시간 당 4,000원
- 3)시간 당 5,000원 4)시간 당 6,000원
- 5)기 타 ()

18. 시간 연장 보육을 위한 일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전혀 필요 없다 2)필요 없는 편이다
- 3)보통이다 4)필요한 편이다
- 5)매우 필요하다

18-1.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의 요소 중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1,2,3순위

까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 ,)

- | | |
|---------------|-----------------|
| 1)기본생활과 습관 형성 | 2)신체발달영역과 영양제공 |
| 3)안전한 생활지도 | 4)정서적 안정 |
| 5)친구관계 및 사회생활 | 6)언어발달과 의사소통 능력 |
| 7)학습지도와 인지발달 | 8)예능 및 창의성 교육 |

19. 현재 시간연장보육 운영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 단체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전혀 필요 없다 | 2)필요 없는 편이다 |
| 3)보통이다 | 4)필요한 편이다 |
| 5)매우 필요하다 | |

19-1. 필요하다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것 1개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 교육
- 2)학부모 교육
- 3)행정부처의 철저한 관리감독
- 4)보육시설과 병원, 경찰서 등의 기관과의 연계
- 5)보육시설의 환경개선
- 6)기타

설문지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지방자치)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제주시 노형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희입니다.

[제주지역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보육교사와 부모의 인식비교연구]란 주제로 석사 학위 논문을 쓰고자 합니다.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의 시간 연장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보육시간에 대한 충족도, 시간 연장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충족도, 영유아들을 돌 볼 수 있는 적절한 보육교사의 수, 적절한 보육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보육교사 여러분들의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목적에만 이용될 것이므로 개인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보장됨을 약속드리오며,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신 대로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설문에 응답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5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자치과

지도교수: 남진열

조사자: 김명희

'시간 연장 보육교사의 일반적 사항 및 어린이집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나이는? 만 세
2. 귀하의 결혼여부 : 1)미혼 2)기혼 3)기타
3. 보육교사경력 : 총 년 개월
4. 자격 1)1급보육교사 2)2급보육교사 3)3급보육교 4)1급유치원정교사
 5)2급유치원정교사 6)특수교사
5. 최종학력
 1)고졸 2)대학 졸(3년제 이하) 3)대학 졸 4)대학원 졸 5)기타
6. 전공
 1)보육학 2)유아교육학 3)사회복지학 4)아동(복지)학
 5)가정(관리)학 6)간호학 7)교육학 8)기타
7. 현 어린이집에 근무한 재직기간 : 만 년 개월
8. 어린이집의 운영 주체는?
 1)국공립보육시설 2)비영리(법인)보육시설
 3)민간보육시설 4)가정 보육시설
 5)직장보육시설 6)기 타
9. 현재 재직하고 계신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은 몇 명입니까?
 1)20인 2)39인 3)49인 4)50인 이상-99인 5)100인 이상
10. 현재 재직하고 계신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받은 모두 몇 개반입니까?
 1)1개반 2)2개반 3)3개반 4)4개반 5)5개반 이상
11. 현재 시간 연장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1)5명이하 2)5명-10명 3)11명-15명 4)16명-20명 5)21명-25명
 6)26명 이상
12. 현재 선생님께서 받고 계신 시간연장 급여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적절하지 않다 2)다소 적절하지 않다

